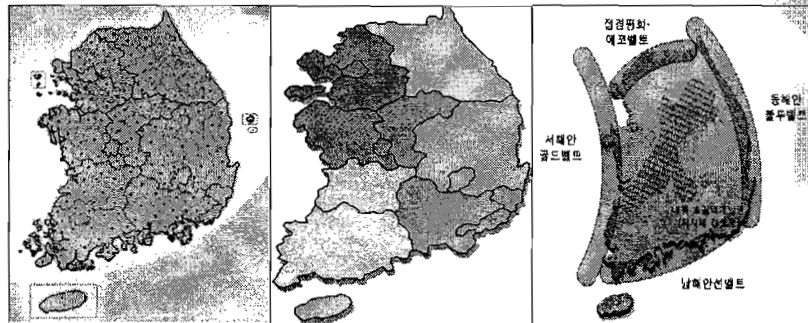


<국토의 3차원 입체 지역발전전략 추진현황>

- ① 기초생활권 : 163개 시·군 단위의 삶의 질과 정주여건 보장
 - * 농어촌 정주·기업여건 개선, 지역의료·복지·문화·환경제고 등 ('08.12.15) ⇒ 금년중 기초생활권계획 수립
- ② 광역경제권 : 7개(5+2) 권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 극대화
 - * 30대 선도프로젝트, 선도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제시('08.9.10) ⇒ '09하반기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
- ③ 초광역개발권 : 대외 개방형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 신성장축 구축
 - * 동서남해안·남북접경벨트 및 내륙벨트 추진발표('08.12.15)



163 기초생활권(1차원) 5+2 광역경제권(2차원) 개방형 초광역개발권(3차원)

초광역개발권 추진방향의 주요내용

- 금년말 최종 확정될 초광역개발권 「기본구상」과 권역별 「종합계획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립된다.
- 먼저, 초광역개발권 구현을 위한 '5대 추진전략'이 강구된다.
 - ① 동북아의 초국경적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, 동북아는 물론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도로, 철도, 공항, 항만 등 통합적인 교통·물류망을 확충하고,
 - 환황해권, 환동해권, 환태평양권의 주요 도시간 경제교류협력도 활성화한다.
 - 지속적 국제협력을 통해 아시안하이웨이, 대륙철도망의 연결을 추진하고, 초장기적 차원에서 해저터널, 열차페리 등 해운물류 네트워크 구상의 경제적·기술적 타당성도 연구할 계획이다.
 - ② 동서남해안 등 초광역개발권역내의 기능적 연계와 상생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동서남북 간선 교통물류망 등 '국토의 초광역 인프라 구상'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실현해 나간다.
 - 이를 위해, 동서남해안축과 동서축(서울-속초)을 포함하는 'ㄱ'자형 고속화철도망 구상 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.
 - ③ 초광역권별로 주력제조업, 물류,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녹색 산업 등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일류수준의 초광역적 산업벨트를 육성한다.
 - 또한, 연안·해양자원, 자연경관 등을 기반으로 국제수준의 해양생태 관광벨트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.

- 지역발전위원회는 그동안 국토해양부(동서남해안권), 행정안전부(접경지역),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, 초광역개발권 계획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작업을 진행해 왔으며,
 - 이날 초광역개발권 중간시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,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세부일정을 제시하였다.

- ④ 4대강, 백두대간 등 초광역적으로 이어지는 국토 공유자원과 역사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문화, 관광, 생태 등 분야의 지역 공동발전사업을 추진한다.
 - 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,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산업·관광·생태환경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해나가는 등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국토기반을 조성해 나간다.
- 한편, 각 벨트별로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「종합계획」을 수립한다.
- 남해안 선벨트는 동북아의 해양관광 및 물류·산업 등 경제 허브로, 동해안 에너지·관광벨트(“블루벨트”)는 에너지와 해양관광 등 녹색성장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며,
 - 서해안 신산업벨트(“골드벨트”)는 동북아 국제비즈니스의 거점과 첨단 신산업벨트로, 남북교류접경벨트(“평화에코벨트”)는 세계유일의 평화·생태벨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.
- 이 같은 4개의 개방형 벨트 이외에, 초광역적 산업기반이나 자연자원을 공유하는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설정하는 「내륙특화벨트」 구상도 추진한다.
- 내륙특화벨트는 첨단산업벨트형, 하천유역형, 산악자연형(백두대간 등), 역사문화권형, 낙후지역 성장촉진형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,
 - 정부가 8월중 내륙특화벨트 설정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,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들이 구상안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하여,
- 연내에는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광역 내륙특화벨트 기본구상을 확정할 예정이다.

앞으로의 계획

- 초광역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을 연내에 추진한다.
 - ‘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’을 (가칭) ‘동서남해안 및 내륙 발전특별법’으로 개정하여 내륙특화벨트의 실행력을 확보하고,
 - 현재 주민지원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‘접경지역지원법’을 종합적인 지역발전법의 형태로 개정할 계획이다.
 - 또한, 남해안 등 해안지역의 자연·생태환경을 철저히 보전하되, 투자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에 장애가 되는 자연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상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.
- 정부는 초광역개발권 계획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,
 -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사업과 장기적인 미래발전전략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검토·추진해 나갈 사업을 구분하여, 실효성 있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.

초광역권 개발의 기대효과

- 우리 국토의 지평을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까지 넓히는 장기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는 초광역권 개발권 정책의 실행 계획이 금년말까지 확정되면,
 - 초광역개발권, 광역경제권, 기초생활권이라는 정부의 입체적인 3차원 지역발전정책이 완성된다.
- 이렇게 되면, 앞으로 각 지역이 국내외 다른 지역과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